

대신대학교 대학원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

제1장 총 칙

제 1조(목적) 본 내규는 학위논문제출자격을 위한 자격시험에 관한 세부사항과 그 시행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장 자격시험

제 2조(자격시험 종류) 석사학위논문제출 자격시험은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으로 한다.

제 3조(자격시험 응시) 자격시험 응시원서는 교학과에 응시원서 양식을 받아 소정기간 내에 제출하여 응시하여야 한다.

제 4조(시험위원) 자격시험의 시험위원은 외국어시험에 있어서는 대학원장이 위촉하며 종합시험의 시험위원은 각 학과장의 추천에 의해 대학원장이 위촉한다.

제 5조(출제방법) 자격시험의 출제방법은 각 시험과목마다 2명 이상의 교수가 출제 및 채점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 사항은 대학원장이 정한다.

제3장 외국어시험

제 6조(응시자격) 외국어시험 응시자격은 1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 한다.

제 7조(시험시기) 외국어시험은 매 학기 초에 실시한다.

제 8조(시험과목) 외국어시험은 영어로 하며 이외의 외국어는 주임교수의 추천을 얻어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 9조(시험시간) 외국어시험 시간은 60분으로 한다.

제10조(합격인정) 외국어시험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.

제11조(재응시) 외국어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당해 학기 경과 후에 재 응시할 수 있다.

제4장 종합시험

제12조(응시자격) 종합시험의 응시자격은 3학기 이상 정규등록과 석사과정 24학점 이상 취득한 자이어야 한다.

제13조(시험시기) 종합시험은 매 학기초에 실시한다.

제14조(시험과목) 종합시험의 과목은 각 학과장 교수가 지정한다.

제15조(시험시간) 시험시간은 100분으로 한다.

제16조(합격인정) 종합시험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.

제17조(재 응시) 종합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당해 학기 경과 후에 재 응시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